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4. 27 선고 2019가단1371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혁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2. 23.

판 결 선 고 2021. 4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6,638,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. 13.부터 2021. 4. 27.까지는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 중 5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선택적 청구 1: 주문과 같다.

선택적 청구 2: 피고와 C 사이에 D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비용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83,423,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4. 20.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 망 C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‘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1998. 4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(갑 제3호증).

원고의 망인에 대한 위 채권은 2019. 12. 31.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93,236,066원에 이른다.

원금 15,000,000원 + 지연손해금 78,236,066원[15,000,000원 × 21년 268/366일(199

8. 4. 8.~2019. 12. 31.) × 24%] = 93,236,066원

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지분이 2/7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26,638,876원(93,236,066원 × 2/7) 및 이에 대하여 2021. 1. 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. 1. 13.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. 4. 27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위와 같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1을 전부 인용하므로 선택적 청구 2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.

판사 허윤범